

1. 개정이유

전기차 배터리 리스 등 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터리 리스 서비스 제공 시 등록원부에 배터리가 대여 된 장치임을 명기

2. 주요내용

가. 배터리 대여 여부를 등록원부에 기재(안 별지 제1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2. . . >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합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변경 사항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등록번호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기 타			
변경 내용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같은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	-------	--

신청인 제출 서류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4.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대여 계약서 사본(자동차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같은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 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3856